

삼척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995년 8월 10일

총무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7월 27일 삼척시장 제출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1995년 7월 28일
- 다. 심사일자 : 제7회 삼척시의회 (임시회)
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('95.8.10) 심사 · 의결

II. 제안설명의요지(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홍성용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신축중인 교동 소재 동부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 (갈천동, 교동)에 위치하고 있어,
- 향후 주민입주시 각종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 조정으로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.

나. 개정조례안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『갈천동』에 편입된 산79-1(임)[6,946 m²]와 산76-9(임)[694 m²]를 앞으로는 『교동』으로 편입함. (안 제2조 『별표』)
- 『교동』 관할구역을 교동일원과 갈천동중 산79-1번지와 산79-6번지를 포함함

나.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]		[별표]	
읍면동별	관 할 구 역	읍면동별	관 할 구 역
갈천동	<u>갈천동 일원</u>	갈천동	갈천동 산70-1번지와 산79-6 번지를 제외한 갈천동 일원
교동	<u>교동 일원</u>	교동	교동일원과, 갈천동중 산79-1 번지 및 산79-6번지를 포함한 지역

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길석)

- 동부아파트의 신축부지가 교동과 갈천동의 2개 법정동의 경계에 걸쳐있고, 또한 7번국도가 개통되면서 교동지역내에 동떨어지게 갈천동 지번이 위치하므로,
- 교동의 주거밀집지역과 인접된 위치에 있는 관계로 갈천동의 산79-1번지 외 1필지 7,640 m²를 교동에 편입시켜 현실과 합치도록 하고,
- 향후 주민입주시 법정동의 2원화로 사유·재산권행사등 각종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 법정동의 경계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N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◦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중앙부처 승인을 받았는지 ?	◦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음.

V. 토론요지 : 없 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VII. 심사결과 :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